

## CONTACT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leeko.com](mailto:chloe.lee@leeko.com)

변호사 차현정

T: 02.772.5971

E: [hyunjeong.cha@leeko.com](mailto:hyunjeong.cha@leeko.com)

전문위원 김시홍

T: 02.6386.0756

E: [sihong.kim@leeko.com](mailto:sihong.kim@leeko.com)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5월 24일,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하, 개정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정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무(이하, 선불업)와 소액후불 결제업무(BNPL) 관련 내용을 강화 또는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뉴스레터에 첨부된 저희 법무법인의 지난 뉴스레터([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본건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

## ■ 선불업 등록 면제금액 기준 설정

개정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에 발행잔액 기준뿐만 아니라 총발행액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등록 면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위와 같은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불업 등록 면제금액의 기준을 분기당 발행잔액 30억원 미만(기존 면제금액 유지) 및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을 각각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영세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위와 같은 구체적인 금액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은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발행인과 특수관계인(상법상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 등) 사이에 유통되던 자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특수관계인을 삭제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규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 구체적인 선불충전금 보호방법 제시

개정법은 선불업자로 하여금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예치의 경우 은행·채신관서, 신탁의 경우 신탁업자, 보증보험은 보증보험사)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그 외 별도관리하지 않는 선불충전금 및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하는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위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별도관리 대상 및 주체)** 본건 개정안에 따르면 별도관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의 금액'이며,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통해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경우와 이용자가 양수한 금액도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선불업자는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매 영업일 별도관리되고 있는 금액을 점검하며, 부족한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별도관리할 뿐만 아니라 선불충전금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불충전금 운용 방법)** 본건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안전한 방법'에 대하여 은행 등에 대한 예치, 국·공·지방·은행채, 지급보증증권, 양도성 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의 매수, 그 외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 등 안전자산 범위 내로 운용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비해 안전자산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 리스크 방지를 위해 외국환으로 표시되어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 ■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한 감독 구체화

개정법은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하여 선불업자가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경영업무로 제도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건 개정안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과 업무범위, 영업행위 제한 등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대상)** 본건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업무 영위에 대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제한하였습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자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경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하여,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하여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타 소액후불결제업자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본건 개정안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참고 및 반영하여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기타 제한)** 소액후불결제업자는 「여성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황,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합니다. 채권회수 관리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등 매각추심은 금지됩니다.

#### ■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거래 대행 가맹점의 자격과 행위규제 명시

개정법은 가맹점의 정의에 기존의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일명 대표가맹점 또는 상위 PG)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건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된 자 및 그 등록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면제된 자(은행 등 금융회사)와, 결제대금예치업자 등 일정한 전자금융업자만이 위와 같은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일반 가맹점의 신용정보 및 거래를 대행한 내용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마이데이터사업자는 상위 PG사를 통해 최종 판매자 정보 등이 포함된 고품질의 결제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또한 상위 PG사에 대해 미등록 PG사와의 가맹모집 계약 체결을 금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PG사들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일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대상 사업자 별로 정리한 다음의 표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사업자	본건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위임사항(일부)
선불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불전자지급수단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관계인 삭제(제3자형 선불 확대)</li> </ul> </li> <li>■ 선불업 등록 면제 기준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기당 발행잔액 30억원 미만 및</li> <li>-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미만</li> <li>- 무상형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산식 세분화</li> </ul> </li> <li>■ 별도관리 대상 총전금 범위 설정(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관리 대상 및 제외 금액 설정</li> </ul> </li> <li>■ 별도관리기관(예치, 신탁, 보증보험)의 범위</li> <li>■ 선불총전금의 안전한 운용(안전자산 범위 확대)</li> <li>■ 선불총전금 관리(매영업일 점검, 보고서 작성 등)</li> <li>■ 파산 등 비상 시 이용자 우선 환급 절차</li> <li>■ 환급 제외 사유, 예외적 양도사유</li> <li>■ 행위규제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채비율 200% 이상시 할인발행 등 금지</li> <li>-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등 장부작성 의무화</li> <li>- 오인행위 방지의무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전금 신탁 및 예치기관 범위</li> <li>■ 총전금의 안전한 운용방법</li> <li>■ 총전금 관리 세부사항</li> <li>■ 총전금의 예외적 양도 사유</li> <li>■ 총전금 지급에 관한 정보 범위</li> <li>■ 행위규제 중 일부 사항</li> <li>■ 잔액 전부 환급 예외사유</li> </ul>
소액 후불 결제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식회사, 자본금 50억원, 부채비율 180%이하</li> <li>- 대안신용평가모델 구축 의무</li> </ul> </li> <li>■ 이용자별 한도 : 30만원</li> <li>■ 사업자 총제공한도 : 전분기 결제규모 15%</li> <li>■ 업무범위(금지업무) 및 구매금지품목 설정</li> <li>■ 행위규제(이자수취 등 금지행위)</li> <li>■ 연체정보 공유(소액후불결제사업자 간)</li> <li>■ 경영건전성 규제 (카드사 수준 대손충당금 등 적립)</li> <li>■ 채권회수 관리 (대부업자 등 매각추심 금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범위</li> <li>■ 겸영 승인 사항, 승인 요건</li> <li>■ 합병·해산·폐지 등의 승인</li> <li>■ 행위규제 중 일부 사항</li> <li>■ 연체정보 제공 범위, 제공계약 체결시 반영사항</li> <li>■ 이용자 요청시 설명할 사항</li> </ul>

대상 사업자	본건 개정안 주요 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위임사항(일부)
거래 대행 가맹점 (전자 지급 결제 대행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 PG사와의 가맹모집 계약 체결 금지</li> <li>■ 재화·용역 공급 가맹점 상호·사업자 번호, 거래대행내용 등 정보 제공 의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 대행 가맹점 자격</li> <li>■ 가맹점의 준수사항</li> </ul>

## 2. 시사점

본건 개정안은 개정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보호를 보다 제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또한 선불업자, 소액후불결제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상위 PG사) 등이 준수할 행위규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사업자들은 개정법 및 본건 개정안에 따라 선불업 등록을 할 의무(2025. 3. 14 까지)가 있는지, 또는 등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선불업자로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규제를 적용 받게 되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관련하여 규제기관의 추가적인 입법 동향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